

美國 地域電話會社(RHCs)의 CATV事業 進出

主任研究員 李 炯 教

이 글에서는 1992년 7월의 「Video Dial Tone」재정이후 미국 지역전화회사들의 CATV사업진출 동향을 다루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의 기술은 단순히 음성과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전화선으로 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매체별로 분리된 시장구조는 통신과 방송이 동시에 제공되는 통합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RHC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장선점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CATV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신과 방송의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目 次

- | | |
|--|---|
| <p>I. 머리말</p> <p>II. 「Video Dial Tone」 裁定</p> <p>1. 內容</p> <p>2. 「Video Dial Tone」서비스의 長點</p> <p>3. 規制機關의 動向</p> | <p>III. RHCs의 動向</p> <p>1. US West</p> <p>2. Southwestern Bell</p> <p>3. Bell Atlantic</p> <p>4. Pacific Telesis</p> <p>IV. 맺음말</p> |
|--|---|

I. 머리말

RHC들은 그동안 전화사업의 지역독점구조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1984년 수정동의판결이후 금지된 국내 장거리통신을 비롯하여 국제전화, 정보서비스, 통신기기제조 등에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하고 있으며 CATV진출움직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RHCs의 정보서비스제공을 허용하였으며 통신기기제조, 장

거리통신등에의 참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7월에 FCC가 결정한 「Video Dial Tone」재정은 사업영역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온 RHC에게는 획기적인 일이다. 미래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대화형비디오 서비스(interactive video service)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통신과 영상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Video Dial Tone」재정 이후 여러 RHC들이 CATV 회사들과 제휴·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머잖아 RHC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CATV는 총세대수의 90%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총가입자수는 약 6,000만세대(총세대수의 60%이상), 연간 총수입은 2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¹⁾

한편, 이러한 RHC들의 CATV사업 진출움직임은 국내차원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CATV회사와 함께 영국의 CATV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1991년 전기통신시장을 대폭적으로 자유화할 당시 시내전화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CATV업자의 전화사업참여를 대폭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이다.²⁾ 이에 따라 광대역 CATV시스템이 구축되고 CATV에 의한 전화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CATV회사는 자신의 교환기를 설치하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RHC들과 CATV회사들의 영국진출은 향후 미국에서 CATV사업과 전화사업의 상호겸업이 인정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사업경험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에 진출하고 있는 지역전화회사는 Nynex와 Pacific Telesis, US West, Southwestern Bell의 4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Video Dial Tone」재정 이후 FCC, 의회등의 각 규제기관의 움직임과 RHC들의 CATV사업진출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 1) 기술적으로 전화선을 통하여 이러한 「Video Dial Tone」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디지털 영상압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1.5Mb로 실용적인 품질의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게된 것과 4-5km정도를 동선에 의해 1.5Mb의 무중계전송이 가능해진 다치화기술때문이다.
 - 2) 시내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CATV시스템에 의한 전화서비스 제공의 조건은 크게 완화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OFTEL의 승인없이 자신의 교환기에 의한 전화서비스의 제공, ② CATV간의 상호접속, ③ 시장체어가 10% 이내인 경우 BT나 머큐리에 대한 접속료면제이다.

II. 「Video Dial Tone」裁定(1992年 7月)

1. 內 容

이 재정은 전화회사가 그 가입자망을 이용하여 대화형비디오정보를 보내는 획기적인 것인데 그 내용은 공중사업자로서의 전송업무와 프로그램제작의 2가지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서는 종전의 기본기능에다 새롭게 비디오 프로그램전송, 비디오 게이트웨이 및 비디오처리와 같은 고도서비스가 추가되고 지역 프랜차이즈의 획득을 면제하였다. 후자에서는 전화회사와 프로그램 제공자가 여러가지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되었으나 기본적인 사항인 「전화서비스와 CATV사업의 겸업금지」해제는 FCC가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하였다. <表 1>은 「Video Dial Tone」재정의 주요 내용이다.

「Video Dial Tone」재정은 기존 동선중심의 전화망으로 집에서 원하는 비디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누구나 싼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상공중망으로 전보와 전화에 이은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재정의 파급효과는 대체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재정에 의해 광섬유에 의한 광대역망의 구축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광대역망을 미국전역으로 확장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비약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RHC들도 이 프로젝트추진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 프로젝트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유저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Video Dial Tone」서비스재정은 집안까지 광섬유가 부설됨에 따라 유저가 전화서비스이 외에 새로운 영상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게 하고 RHC들의 광섬유망구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FCC는 이 재정에 의해 지금까지 미해결과제였던 RHC들의 CATV사업에의 진출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FCC는 「케이블 통신정책법」에 의해 RHC들이 TV프로그램의 제공, CATV사업에의 자본참가가 인정되지 않는 법적 규제하에서 최대한으로 RHC들의 CATV사업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表 1〉 「Video Dial Tone」재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각주	
비 디 오 의 전 달	기본서비스	신호의 전송	종래부터 실행되고 있음. (CATV 회사를 고객으로 하여)
	고도서비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on Carrier 베이스에서 비디오 프로그램, 고도서비스를 보냄. (후관차이즈 불필요)*1 · 회선, 처리등의 기능 · 비디오 게이트웨이 · 비디오 처리*2 · 비디오메일이나 비디오스토어 · 가입자단말기기 · 과금과 집금*3, 오더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수의 프로그램을 방송형으로 갖춘 이른바 “CATV 서비스”가 아니다. *2 VTR이나 카메라 앵글의 조작등 *3 · 과금에는 프로그램의 내용 (Content)은 포함되지 않는다.(PPV와는 다르다) · 실시할지의 여부는 Telco의 자유 *4 고도서비스는 Telco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을 전달과 서비스엑세스로 나눌수 있다.
프 로 그 램	허용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 (1%→5%) · Telco와 프로그램회사가(대등한) 제휴관계를 만들어 VDT를 추진하기 쉽게 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 종래는 Carrier-User의 관계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 (예) JV, 연결, 컨설턴트, 하부 시설건설에 따른 거래, Telco는 프로그램회사에게서 자금차입.
	의회에 대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CATV 사업의 상호점업의 금지」의 해제 · 상금지금이 제외되는 기준의 변경*6 	*6 인구 2,500명이하를 1만명으로 변경.(안)

Video Dial Tone재정을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FCC재정은 RHC들이 전송설비를 소유하고 이를 공중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함과 동시에 CATV회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CATV업자는 프로그램제공이라는 형태로 양사의 분업체제에 의해 새로운 제휴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 「Video Dial Tone」서비스의 長點

1) 전화회사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의한 수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반면, Video Dial

Tone서비스는 아래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에 의한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전화회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시장규모가 크고 발전성이 기대되는 CATV사업에의 진출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전화회사들의 서비스범위내에서도 CATV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表 2> Video Dial Tone에 의한 제공서비스의 예

채널	서비스 내용
1 ~ 2	프로그램의 안내와 목록
3 ~ 40	통상의 방송프로그램과 CNN등 /CATV등 TV방송
41 ~ 65	유료TV방송
66 ~ 90	외국어채널
91 ~ 100	홈쇼핑
101 ~ 120	음악회와 권투등 특별한 이벤트
121 ~ 130	교육프로그램
131 ~ 150	지역사회와 지방기업등에 관한 정보
151 ~ 200	정보와 오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201 ~ 400	pay per view의 영화

2) CATV회사

전화회사의 망은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고 프로그램선택폭도 확대되어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TV전송과 기타 전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한 프로그램만을 전송하는 Video Dial Tone 서비스에 의해 전송로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광섬유를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전화회사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유 저

지금까지의 TV방송은 TV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냈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Video Dial Tone서비스에 의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 쌍방향기능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TV의 리모컨과 같은 기기에 의해 프로그램의 지정이 가능하고 TV를 통해서 요금지불이 가능하고 홈쇼핑, 여행예약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規制機關의 動向

1) FCC

FCC는 1984년의 「CATV법」의 수정을 검토하기 위한 의회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것은 하원 통신위원회의 E.J.Markey의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신으로서 CATV사업을 해금하는 경우 시청료는 무료로 할 것, 구조분리를 부과할 것(자회사에 의한 CATV제공), CATV에 사용할 수 있는 전송용량을 한정하는 문제 등의 검토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FCC는 1984년의 CATV법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RHCs에 의한 기존 CATV회사의 매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RHCs가 CATV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여 건전한 CATV사업의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FCC의 1992년 「Video Dial Tone」제정 이후 각 RHCs는 활발하게 CATV회사와 제휴를 모색하여 CATV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FCC는 CATV회사에 의한 경쟁접속사업자(CAPs)의 매수도 허용하여 규제완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일부 관측통들은 클린턴 정부가 상무부내의 NTIA(전기통신정보청) 역할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FCC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향후 NTIA가 미행정부의 통신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답신은 CATV사업을 지역공중 전기통신사업자에 허용할 당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1984년 CATV법 수정검토방향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대통령선거후 비교적 장기정책이 수립되기 쉬운 시기에 전기통신의 규제완화가 일거에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클린턴 정부가 규제완화흐름에 제동을 걸 것인지, 클린턴 신정부하에서 정책·규제측면의 세력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의 회

FCC, 의회등 미국의 통신정책 규제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규제강화에 의한 독점적 폐해의 제거보다는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 촉진정책을 취해 왔는데 반드시 일관되게 규제완화가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의회측은 규제완화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를 들어 부쉬대통령의

거부권발동을 다시 반복해 성립한 1992년 CATV규제법은 CATV요금의 적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었다. 1993년에 들어 미국 의회의 입법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미하원의 R.Boucher와 M.G.Oxley의원은 3월 29일 CATV사업에의 전화회사의 참여를 인정하는 법안인 「통신의 경쟁력강화및 하부구조 근대화를 위한 법안」(Communications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Act)를 제출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이 법안제출이유로 첫째, 작년 10월에 성안된 「CATV 소비자보호·경쟁법」에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만큼의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CATV요금인하와 CATV가입자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전화회사의 참여에 의한 경쟁도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최근 CATV회사측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에의 참여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전화회사의 CATV사업에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 셋째, FCC는 1992년 7월에 「비디오 다이얼 톤」에 관한 재정을 내릴 때 의회에 법률에 따라 전화회사의 CATV회사에의 참여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번 법안은 이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화회사가 자사업범위내에서도 CATV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 ② 전화회사에 의한 CATV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의할 것, 상호보조를 하지 않을 것, 회계장부를 분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 ③ 전화회사에 의한 CATV회사의 자본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전화서비스와 CATV서비스의 공동마케팅 제공을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위의 ②③은 이미 FCC재정에 의해 인정된 사항으로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은 ①항으로 자사업범위내에서도 CATV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원전기통신소위원회 의장인 E.J.Markey의원이 최근 CATV사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예상되고 4월초순에는 이법안에 대한 지지자가 두 의원외에 12명이 더 가세하였다.

전화회사들은 이 법안에 대하여 이미 강한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 Nynex의

경우 이 법안이 비디오산업에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미국의 정보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클린턴 정부가 1993년말 혹은 1994년초에 일련의 전기통신에 관한 안전에 관해 의회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Ⅲ. RHCs의 動向

1. US West

US West는 서비스범위내의 미국 서부 14개주의 가입자 132만세대를 연결한 망으로 25년이내에 모든 「Video Dial Tone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광대역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전화와 데이터외에 쌍방향 CATV, 비디오방송, 홈뱅킹 등을 위한 전송로를 가정및 기업에 제공한다. 1993년말부터 1,000가입자회선에 대해서만 기술 실험을 실시하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광케이블의 부설을 개시하여 2000년까지 30%를 광대역화하고 그 후는 50만회선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미 Bell South, Bell Atlantic, Nynex등도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데 서비스범위 전역에 걸쳐 대규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비는 1회선당 1,000달러이하로 보고 통상의 건설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채용하며 광케이블은 각가정의 부근까지 부설하여 그 지점과 가정간은 동축케이블과 동선을 사용하고 향후 시장의 수요와 규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계획을 결정해 가기로 하였다. 현재 비디오 채널은 70~100개채널정도인데 앞으로 500개채널로 될 것이다.

US West는 1992년에 망근대화에 24억달러를 지출하였는 데 금후 이 광역화에는 연간 21억~22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동사는 계획추진에 필요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1993년 여름까지 1-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영국의 CATV사업에 미국의 대규모 CATV회사인 Telecommunication사와 함께 참여하여 다른 지역전화회사에 비해서 CATV사업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US West는 최근 미국 제2위의 CATV회사인 Time Warner Entertainment Co.³⁾에 25억달러(25.51%)규모로 자본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제휴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수정동의판결(MFJ)의 개정, 전화회사와 CATV회사간의 상호소유제한, 지역전화경쟁, PCS면허부여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WE는 이미 교환기능을 가진 광대역 CATV망인 「full-service network」을 25개 대도시에 구축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US West가 이 계획에 출자하게 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네트워크는 500개 가정의 가입자선에 광케이블을 부설하여 기존 케이블 시스템의 전송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며 ATM패킷데이터교환기, Mass Video Storage 시설, 가입자용 디지털 컨버터박스가 설치될 것이다.

〈表 3〉 TWE의 주요 CATV시장

	가 입 자 수
New York City	910,000
Central Florida	475,000
Tampa Bay	327,000
Houston	234,000
Honolulu	228,000
Rochester, N.Y.	190,000
Cincinnati	185,000
Kansas City, Mo.	183,000
Memphis	176,000
Austin	164,000

부채규모가 큰 TWE로서는 추가투자재원을 마련하기 곤란하였으나 이번 US West와의 제휴로 자금문제가 해결되었고 실제로 25억달러의 투자액중 15억달러는 부채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3) TWE는 Time Warner Cable, Warner Brothers, Home Box Offices, Time Warner AxS Holdings의 4개 회사로 구성된 회사로 TCI에 이어 시장점유율을 2위의 CATV회사이다.

US West는 TWE와 함께 광케이블망 구축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전화서비스시장에서 경쟁업체들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US West는 Time Warner를 통하여 CATV업체가 광케이블을 이용해 장거리전화와 지역전화를 연결하는 접속서비스시장⁴⁾에 진출함으로써 다른 RHC의 서비스지역에서도 전화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US West는 단순히 전화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홈뱅킹, 홈쇼핑, 대화형 비디오서비스, PCS 등에 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화형 비디오 서비스는 멀티미디어 오락서비스의 핵심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성장산업으로 TWE는 이 서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영화및 오락 프로그램)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US West에게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US West는 TWE와 서로 중복되는 서비스지역이 거의 없어 이번 제휴에 따른 미 통신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잇점도 누릴 수 있다.⁵⁾ 특히 MFJ의 장거리서비스제한규정을 피하여 위성을 통하여 TWE 시스템에 비디오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제휴가 US West가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 통신망구축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2. Southwestern 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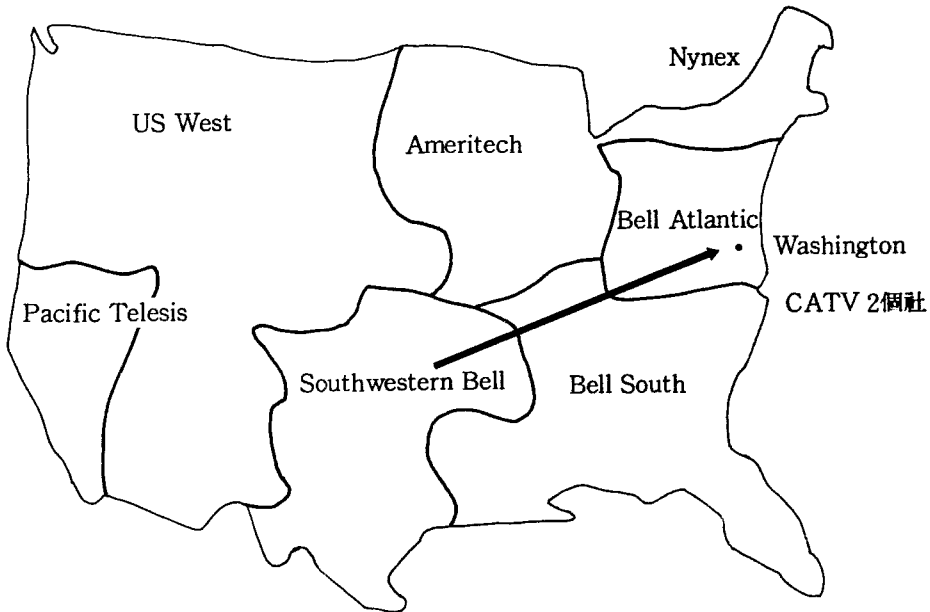
Southwestern Bell은 Bell Atlantic 서비스지역내의 워싱턴 D.C. 교외에 있는

- 4) 이 접속서비스시장은 RHC 전체 매출액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전체이익에서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TWE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TWE의 서비스지역과 인접한 Pacific Telesis과 Southwestern Bell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타 지역전화회사들도 이번 제휴사례를 모델로 하여 케이블회사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5) 그러나 FCC는 「비디오 다이얼 톤」 재정(docket 87-266)에서 비디오프로그램 제작자의 주식중 최대 5%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TWE산하의 Warner Brothers나 HBO가 TWE의 지분 25.51%을 소유하게된 US West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US West는 5%소유권제한은 프로그램제작자 자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다이얼 톤」망을 이용하는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US West가 제3자의 주식중 5%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한 US West의 비디오 다이얼 톤 시스템배포를 맡긴 제3자에게 TWE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ATV2개사를 6억 5,000만달러에 매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사의 서비스범위의 CATV사업자매수이기 때문에 CATV정책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금후 FCC, 사법성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매수가 인정되게되면 최초로 CATV자회사를 갖는 지역전화회사가 된다.

이제까지 지역전화회사는 Video Dial Tone방식에 의해 CATV사업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데 비해 Southwestern Bell은 CATV사업의 직접매수에 나섰다. 한편 매수예정지역내에서 동사는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장래 CATV시스템과 결합한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화사업분야에서 지역전화회사끼리 경쟁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圖 1]은 이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圖 1] Southwestern Bell의 매수기업 위치도



Southwestern Bell이 매수하는 회사는 Houser Communication 산하의 Montgomery Cable Vision와 Arlington Cable Parteners이다. 서비스지역은 학력이 높은 중류가정이 많고 역내의 32만세대중 22만 5,000세대가 가입하고 있다. 이 회

사들은 발전 가능성이 높아 미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CATV회사이고 통상 1가입 사당 월평균사용료가 35달러인데 당지역에서는 45달러정도이다.

동사산하의 Southwestern Bell Mobile System이 이미 이지역에서 Bell Atlantic에 대항해서 「셀룰러 원」이라고 부르는 휴대자동차전화사업을 하고 있다. 동사의 매수이유는 보다 양질의 CATV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사의 기본사업에 기여하기 때문이고 CATV와 휴대·자동차전화의 양서비스를 운영하여 광고와 요금청구 등의 면에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한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매수에 따라 13,000마일에 이르는 동축케이블(일부는 광섬유케이블)로 구성된 CATV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휴대자동차전화시스템과 결합해서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Bell Atlantic 산하 전화회사로부터 망을 리스하고 있는 데 CATV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회사의 망을 바이패스한다. 또한 양대망을 결합한 망에 의해 장거리전화회사의 망에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RHC산하의 CAP(경쟁접속 제공업자)으로 된다. 끝으로 PCS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전화서비스의 분야에서 이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ell Atlantic 산하의 전화회사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한편 Bell Atlantic은 지역전화회사중에서도 Video Dial Tone 서비스방식에 의한 CATV서비스제공에 적극적인데 Southwestern Bell이 매수에정인 알링턴지역의 일부에서도 사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장래 CATV및 쌍방향서비스의 양분야에서도 양사는 경쟁하게 될 것이다.

Southwestern Bell는 이미 영국에서 120만세대규모의 지역에서 CATV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40만가입규모의 CATV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CATV시스템에 의한 전화서비스제공에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동사는 미국내에서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CATV사업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Bell Atlantic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Bell Atlantic은 이와같은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휴대·자동차전화서비스의 분야에서의 경쟁이 진전되고 있어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CATV회사는 일찍부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미국 제 2위의

CATV회사인 TCI는 최대 규모의 경쟁접속업자인 Teleport를 매수하고 또한 몇몇 대규모 CATV회사는 PCS서비스시험을 실시중이고 AT&T등 전기통신회사와 제휴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시험을 하고 있다.

CATV업계는 이제까지 전기통신사업자의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번 매수에 Southwestern Bell이 제시한 금액은 1가입자당 2,888달러로 이제까지의 2,000~2,100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까지 CATV회사의 매수는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의 매수가 인정되면 매수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벌써 CATV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CATV업계가 벨계회사의 자사의 서비스범위외에서 CATV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지만 CATV업계가 이번의 거래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전화회사의 CATV시스템은 동축케이블을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구리선이 주인 시내전화망을 고도화하는 데 좋은 기회이며 광케이블을 부설하는 것보다 싼 경비로 현재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CATV회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량의 채널전송과 Video On Demand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나 전화회사는 디지털 압축기술과 디지털 교환기에 의해서 이와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두 회사는 보완적인 관계로 제휴매수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번의 매수에 대해서 규제당국이 내린 판단은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의 CATV기업매수는 Southwestern Bell의 서비스범위외이기 때문에 케이블 정책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 FCC, 1984년에 AT&T분할을 다룬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그린 판사및 관계지방자치체의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⁶⁾

6) ① 사법성 및 그린판사 : 다음 2건은 지역전화회사에 인정되고 있는 장거리전화서비스의 제공이 되기때문에 특별승인이 필요
 -CATV회사의 위성을 통한 CATV프로그램의 수신
 -몽고메리케이블비전의 서비스범위내의 LATA간 통화
 ② FCC : 위성지구국과 마이크로웨이브의 라이선스의 소유자의 변경
 ③ 지방의 규제기관 : CATV회사의 소유권이전

Pacific Telesis는 1989년 시카고의 CATV회사의 주식 68% 매수를 사법성에 신청하였는 데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Southwestern Bell은 이것이 정보서비스에 관한 규제완화이전에 낸 신청이기때문에 이번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통신서비스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금년 7월이후에 허가를 얻어 1994년 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Bell Atlantic

Bell Atlantic은 CATV사업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 3종류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독자적인 사원대상의 「Video on Demand」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두 개의 CATV회사에 동사의 전화망을 사용한 「Video Dial Tone」 방식에 의한 영상전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Bell Atlantic은 타사에 앞서 망의 고도화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광섬유의 부설과 디지털 교환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광대역서비스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pportunity Newsersy」라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9년까지 55억달러를 투자해서 5,600만마일의 동선 가운데 12,000피트이하의 케이블이외에는 모두 광섬유케이블로 교환할 예정이다. 그 후 2010년까지 10억달러이상을 투자하여 45Mbps/s의 광대역서비스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망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이것은 현재 전화회사중 가장 앞선 계획이다.

동사가 발표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의 2건의 Video Dial Tone서비스의 제공은 이 「Opportunity Newsersy」의 일환이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Video on Demand서비스 실험으로 1992년 10월중반경 동선을 사용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기술(ADSL)⁷⁾에 의한 「Video On De-

7) 가정과 상점등 대중용 전화선(4KHz)과 ISDN기본군상에 request용의 상층 16kbp/s와 하층의 비디오대역(100-400KHz)을 설치하여 1쌍의 선으로 전화혹은 ISDN과 비디오서비스가 동시에 수용되어 진다. Video Dial Tone서비스는 광섬유케이블 도입전에 동선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Bell Atlantic은 Bellcore가 개발한 방식을 채용한다.

mand」서비스의 실험을 이번 여름부터 400명의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⁸⁾ 이 ADSL기술을 사용하면 가입자망을 광케이블화하기이전 (1994년)에도 CATV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최근 IBM 컴퓨터 RS/6000시리즈와 비디오소프트웨어인 비디오서버를 채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두 번째 사업은 1992년 11월 Sammons Communications와 광케이블에 의한 영상전송서비스를 1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의 뉴저지벨 전화회사는 향후 2년내에 Sammons Communications가 서비스 제공중인 뉴저지주의 3개소에서 총 17,000세대를 대상으로 광케이블망(단 현재는 FTTC(Fiber To The Curb)이기 때문에 curb와 각가정과는 종래의 동축 혹은 동선케이블을 사용)을 부설할 예정으로 현재 CATV가입자는 8,000세대이다.

이 광케이블에 의한 전화서비스와 60채널의 CATV(현재는 32채널), Video On Demand 및 Bell Atlantic과 다른 정보서비스회사에 의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쇼핑, बैं킹, 여행, 건강 등에 관한 것이 제공될 것이다. 이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비는 막대하지만 2000년경에는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992년 12월 중순, 뉴저지벨은 영상프로그램의 판매·관리·제공을 하는 CATV회사인 Future Vision of America Corp. 와 광케이블에 의한 「Video Dial Tone」서비스를 10년간에 걸쳐서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뉴저지벨은 FCC의 허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뉴저지주의 도버시의 38,000명에 이르는 가정과 기업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전화이외의 뉴스, 음악, 영화 등의 TV프로그램(128개 채널 프로그램중 60채널을 선택해서 제공)과 정보의 쌍방향 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

Future Vision은 금년 가을부터 CATV방송을 시작하는 신설회사로 도버시에는 이미 한 CATV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향후 신규 회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신회사는 경쟁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요금(평균 월33달러)보다 유리한

8) 버지니아주 북부지역에 실험대상 사원들은 집에 비디오신호 압축디코더를 설치하고 비디오 서버(비디오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컴퓨터)를 다이얼로 호출하여 보고 싶은 스포츠, 오락,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시하면 TV화면에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수신(전송속도 1.54Mbps)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요금으로 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ell Atlantic에 따르면 망건설에는 약 1,740만달러가 소요되며 이미 설치된 케이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규로 부설하는 경우에 비해 반정도가 절감되고 1997년에 실용화되면 2002년에는 흑자를 예상할 수 있다.

FCC가 이번 「Video Dial Tone」관한 재정을 한 직 후부터 모든 RHC들은 불만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RHC각사가 프로그램제공과 CATV회사에의 자본참가도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의 CATV사업참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Bell Atlantic은 그 중 가장 강력한 주창자로 이미 작년 1992년말 산하의 2개 자회사가 FCC 등을 상대로 버지니아주 지역재판소에 「1984년에 시행된 CATV사업에의 전화회사의 진출을 금지한 케이블정책법은 헌법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보장)와 제5조(법앞에서의 평등을 보장)에 위반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⁹⁾

9) 소송을 제기한 두 회사는 산하 전화회사인 Chesapeak & Potomac Telephone과 프로그램내용을 포함하여 CATV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된 Bell Atlantic Video Services Co.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의 Video Dial Tone재정에서 TV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도록 의회에 권고하는 데 그쳤다. 이후 몇몇 RHC가 이 서비스제공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만약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CATV진출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Bell Atlantic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RHC는 수년 동안 MFJ에 금지되어 있던 3개업종(정보서비스제공, 통신기기제조, 장거리통신서비스의 제공)가운데 정보서비스제공에 큰 관심을 보여 이의 제공허용을 위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1991년 10월 최고재판소로부터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인정 받았고 이에 앞서 FCC로부터 ONA실시와 관련해서 조건부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인정 받았다. RHC가 CATV분야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케이블정책법 533조 b항d의 TV프로그램제공의 금지이다. 즉 TV프로그램도 정보의 일종에 불과한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소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수정 제1조(언론자유를 보장)위반

케이블 정책법 533조 b항은 전화회사에 의한 비디오프로그램의 제공, 가입자에 의한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TV프로그램의 향유를 금지하는 것

- 헌법수정 제5조(법앞에서 평등을 보장)위반

케이블 정책법 533조 b항은 다른 유사산업(전기·가스등의 공익산업)에 속한 기업에게는 CATV프로그램의 제공을 인정하면서 전화회사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CATV회사와 시내전화회사의 서비스제공범위를 고려해보아도 CATV회사는 전화서비스제공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회사측에 CATV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 양사의 잠재력발휘 권리침해

케이블 정책법 533조 b항은 양사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수정 제1항, 제5항에 위반

또한 CATV업계는 Bell Atlantic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전송시스템은 어떤 회사에도 무차별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오직 1개 회사에만 제공되는 것은 Video Dial Tone서비스에 관한 규제에 어긋난다고 FCC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4. Pacific Telesis

Pacific Telesis의 자회사로 캘리포니아주를 서비스지역으로 하는 전화회사인 Pacific Bell은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내 서비스지역의 전세대를 대상으로 광대역 광케이블을 부설할 예정이다. 이는 US West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서비스지역을 광대역화하는 계획이다. 한편 이 광대역시스템의 응용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160개의 교육기관 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 CalREN을 구축하여 금년말부터 2년간에 걸쳐서 시험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CATV회사와 제휴하여 광대역시스템에 의한 전화, 화상, 기타 신호를 송신·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진행할 예정이고 CATV프로그램제작회사에 대해서는 비디오 고속전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내의 모든 CATV회사와 제휴하여 광대역 시스템에 의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1994년 봄경에 수 개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연말에는 적어도 1개사와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cific Telesis는 이미 1년전에 CATV회사인 South Center사와 제휴하여 새로이 개발된 지구에서 전화와 CATV망의 동시실험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취소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비스지역내의 가정과 기업의 반을, 2015년까지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부설할 예정이다. 현재 FTTC(Fiber To The Curb)가 될 지 FTTN(Fiber To The Neighborhood)이 될 지 여부와 연간 계획추진규모는 미정이다. 현재 1,400만회선을 운용하는 외에 매년 증설회선수는 40만회선에 이를 것이며 적어도 기존의 협대역 동축케이블과 철선은 내구년수에 따라, 혹은 이보다 조기에 광대역망으로 대체될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통신과 방송은 그 경계가 무너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미디어융합」(media-fusion)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새로운 「제3물결」의 미디어시스템은 대량생산이후의 소품종다량시대를 맞이하여 영상제품을 주문생산하여 여러가지 다른 영상·아이디어·상징물을 표적이 정밀하게 정해진 인구계층·시장·연령계층·전문직업인 사회·민족 또는 생활양식 집단에게 내보낸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는 서로 긴밀한 상호연관속에서 융합되어 데이터·영상·상징물 등을 서로 주고 받는’ 미디어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Video Dial Tone」재정은 이러한 미디어융합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기존의 CATV회사, TV방송회사, 위성방송,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Video Dial Tone 서비스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각 회사간 제휴·통합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로 보아 거대회사들이라 할 수 있는 RHC들의 CATV사업에의 진출은 기존의 CATV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전화사업의 지역 독점구조가 붕괴되어 점진적인 경쟁의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Telecommunications Reports*, 1993. 5.24 / 5.31 / 6.7
2. 『世界のテレコムニュース』, No. 261 / 262 / 263 / 264 / 265 / 268
3. 『KDD 總研 R&A』, 1993. 4
4. 『海外電氣通信』, 1993. 1 / 4
5. 『電氣通信』, 1992. 10
6. 『電子新聞』